

한시 특별지원자금 시행 방안

1 지원배경 및 규모

- ☐ 금융비용 부담 증대 등으로 자금사정 및 조달 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위해 기존의 「한국은행 전북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」과 별개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운용
- ☐ 현재 한도 : 4,454억원 (2025.2월 배정시부터 적용)

2 지원 대상

- ☐ 은행이 아래의 운용기준에 맞게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(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또는 대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출 포함)
 - (지역)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*
 -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 - (업종*)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, 부동산업, 금융·보험업, 사행시설, 병원업, 수의업, 약국 등 일부 업종은 배제**
 - * 복수업종 영위 업체의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'주된 업종'을 기준으로 판단
 - ** <별표> '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대상 제외업종' 참조
 - (신용등급*)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저신용(6~10등급 및 무등급) 중소기업

*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「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」에 따른 신용등급

- (업체당 한도) 업체당 은행 대출취급실적 10억원 이내로 제한
- (중복지원) 여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(지방중소기업지원(C2자금) 포함)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*

* 기존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상환(대환대출 포함)시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

- (지원대상 제외 대출금) 아래 각각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
 - 최종부도거래처·폐업업체·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금
 - 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방식 대출금
 -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정책금융으로부터 대출 재원을 지원받고 있는 대출금(다만 이차보전 방식의 대출은 지원대상에 포함)

3 지원 기간

☐ 은행 대출취급기간 : 2024. 2. 1일 ~ 2026. 1.31일

☐ 한국은행 지원기간(배정 기준) : 2024. 4. 1일 ~ 2027. 2.28일

- 은행 대출취급기간 내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(1년 이내)까지 지원

<별표>

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대상 제외업종

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
전문 소매업	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
운송관련 서비스업	52915 주차장 운영업
주점업	5621 주점업
금융 및 보험업	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부동산업	68 부동산업
전문 서비스업	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
교육 서비스업	855 일반 교습학원
보건업	86 보건업
오락관련 서비스업	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